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25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74095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시 ○○청장

변 론 종 결 2017. 3. 23.

판 결 선 고 2017. 4.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5,934,420원 및 농어촌특별세 5,593,44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25

가. 원고는 2013. 3. 2.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지배 내지 경영관리 등을 목적으로 ○○중앙회에서 분할되어신설된 법인으로,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상의 '금융지주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4. 14. 우리○○ 주식회사 및 ○○ 이하 위 각 법인을 합하여'매도인'이라 한다)로부터 ○○○생명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4,573,773주(발행주식 총수의98.89%,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6. 5. 금융위원회로 부터 금융지주회사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았으며, 2014. 6. 27. 매도인에게 이 사건 주식의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위 주식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으로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이하 '간주취득세'라 한다) 과세요건을 충족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4. 8. 26. 피고에게 이 사건 법인이 소유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에 이 사건 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에서 이 사건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98.89%)을 곱한 2,796,721,39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간주취득세 55,934,420원 및 농어촌특별세 5,593,4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5. 3. 20.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6항 제3호(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 및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15. 2. 27. 대통령령 제26125호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25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항 제1의6호에 해당하여 간주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어야 함을 이유로 위와 같이 납부한 간주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4. 2. 이 사건 감면규정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가 되거나'의 의미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지주회사가 됨과 동시에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를 말하고,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란 이미 지주회사인 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미 지주회사인 회사가 자회사가 아닌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후단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6.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감면규정 후단의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라 함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아닌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됨과 동시에 해당 법인을 새로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부합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을 통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됨과 동시에 위 법인을 자회사로 편입한 원고를 이 사건 감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25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감면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 관련 법령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감면규정 후단의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지주회사가 기존 자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외에 지주회사가 일반회사 등을 새로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감면규정 후단은 지주회사가 기존 자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상 자연스러운 해석이며, 기존 자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를 넘어서 지주회사가 일반회사 등을 새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25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까지 이 사건 감면규정 후단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확장해석으로 보인다.

② 지주회사를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는 지주회사의 설립이나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소유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데에 있는데(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두2781 판결 등 참조), 기존의 기업집단 내에서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해 이미 자회사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위 입법취지에 부합함은 명백하나, 지주회사가 기존의 지배관계가 없던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은 지배관계를 새로 창설하고 기업집단을 확장하는 것으로 위 입법취지에서 말하는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포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를 지주회사의 새로운 자회사 편입까지 장려하는 것이라고 확대하여 보기도 어렵다.

③ 이 사건 감면규정은 1999. 12. 28. 법률 제6045호로 신설되었는데, 그 당시 시행 중이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12. 28. 법률 제60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 제3호는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목적으로 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회사가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에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간은 당해 국내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었다. 이러한 공정거래법 규정의 취지는 종전에 설립을 금지하여 왔던 지주회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서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방지하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25

위한 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감면 규정 신설 당시의 공정거래법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감면규정 후단이 기존의 지주회사가 일반회사를 새로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④ 또한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가 새로 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 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의 사업계획 타당성 및 건전성,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 등 위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위 승인을 함에 있어 당해 자회사의 편입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를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위 승인을 함에 있어 조건을 붙일 수 있고,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건전성 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영건전성 등의 개선을 위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제16조, 제17조)'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감면규정이 지주회사의 새로운 자회사 편입까지 지원하려는 것이라거나 이 사건 감면규정 후단에 기존의 지주회사가 일반회사를 새로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가 포함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자회사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이 주식 등의 취득 전인지 후인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합목적적 해석이 필요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7호에서 간주취득세 감면대상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의해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면서 이를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감면규정 후단의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주회사가 일반회사를 새로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감면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25

정과 관련한 법령에서 자회사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위 감면규정의 자회사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점의 확정 및 그를 위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7호는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라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그 완전자회사의 주식 취득에 따른 간주취득세를 감면한다는 것이므로, 위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감면규정 후단에 지주회사가 일반회사를 새로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할 수도 없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순차로 나누어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고, 이 사건 법인을 자회사로 편입한 후 과점주주가 되는 것과 자회사로 편입함과 동시에 과점주주가 되는 것 사이에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이 사건 감면규정 후단의 의미를 이미 자회사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 및 조세평등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거래당사자가 어느 거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할 것이고, 서로 다른 거래의 궁극적 목적이 동일하다고 하여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같다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 거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원고가 취할 수 있는 각 거래의 실질이 같다거나 원고가 선택한 이 사건 주식 거래 방식에 대하여도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25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경아

판사 김세현

판사 강동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25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 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④ 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군수는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물건이 다른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이라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과점주주의 주식 등의 비율, 과세물건, 가격명세 및 그 밖에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25

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⑥ 201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배(이하 "지배"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할 것

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다.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것

2. "자회사"라 함은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회사(외국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6조(자회사 등의 편입승인) ① 금융지주회사(다른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새로이 자회사 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를 통한 자회사의 주식소유 등으로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건전성 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인에 경영건전성 등의 개선을 위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회사 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자회사 등의 편입 승인요건)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회사 등으로 편입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2.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의 재무상태와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
3. 주식교환에 의하여 자회사 등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비율이 적정할 것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자회사 등의 편입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세부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15. 2. 27. 대통령령 제26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비과세)

⑥ 법 제4조 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의6.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 또는 제134조의3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또는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3호에 따른 감면. 끝.